

경상북도 고시 제2010-207호

김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인가 고시

하수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(슬러지처리시설)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0년 5월 24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목적

- 김천시내 발생슬러지의 성상 및 분포 분석에 따른 합리적인 최적처리방안을 선정하고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향후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슬러지의 적정 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보건 향상

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인가내용

가. 사업시행자 및 주소

- 2) 주 소 :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1284번지

나.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등

시 설 명	위 치	부지면적 (㎡)	시설용량 (톤/일)	처 리 공 법
김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	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 (기존 하수처리장내)	1,536	50	건조후 연료화 (화력발전소 보조연료)

다. 사업시행기간 : 2010. 6. ~ 2011. 12.

라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김천시 대광동 850번지(기존하수처리장 부지내)

마. 기타 관계서류는 김천시 상하수도과(054-420-6679)에 비치하고 있으니, 이해

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